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2나5127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2나51275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8 선고 2021가단27301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사단법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

변론종결 2022. 6. 10.

판결선고 2022. 8. 19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8. 선고 2021가단27301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1,485,47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피고가 2012. 2. 6.부터 2018. 2. 6.까지 107회에 걸쳐 원고의 돈 합계 41,485,470원을
불법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돈과 이에 대한
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1호증의 기재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2~6호증의 기재를 모두
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
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권순호, 판사 강희석, 판사 오연정